

##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### 1. 조 례 명 :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이유

-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, 회계관직, 결손처분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(안 제1조)
-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책과 책임을 「지방회계법」을 따르도록 함(안 제3조)
-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(안 제6조, 제7조)
  - “대불금(大佛金)”을 “대지급금”으로 함
-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8조)

### 4. 의 견 제 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

- 전화 : 043)740-3048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##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급권자(다음부터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”를 “수급권자”로, 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다음부터 “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”을 “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회계는 의료급여기금(다음부터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의”를 “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 교부받은”으로, “경비”를 “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「지방회계법」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은 영동군청(이하 “군청”이라 한다) 소속 주민복지과장,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은 군청 소속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지방회계법」 및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과 관련하여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회계책임관에게, 지출원 및 출납

원에 관한 사항은 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관이 수입금”을 “회계책임관이 수입금(「의료급여법」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다. 이하와 같다)”으로, “수입액”을 “수납하여야 할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금운용관”을 “회계책임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관”을 “회계책임관”으로, “대불금(大佛金)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(大佛金)을 갚아야 할 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기금출납원에게는”을 “대지급금을 구분 한 후 출납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출납원은 해당 군”을 “출납원은 영동군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대불금의 상환 등)”을 “(대지급금의 상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불금(大佛金)”을 각각 “대지급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불금(大佛金)”을 “대지급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(大佛金)”을 “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불금(大佛金)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”를 “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1. 채납처분이 끝나고 채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3. 채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채

납쳐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

4.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영동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  
한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<u>수급권자(다음부터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</u>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다음부터 “회계”라 한다)</u>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세입과 세출) <u>회계는 의료급여기금(다음부터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<u>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, 기금출납원은 군의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수급권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세입과 세출) <u>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 교부받은 ----- -----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「지방회계법」 제10조에 따른 <u>회계책임관은 영동군청(이하 “군청”이라 한다) 소속 주민복지과장,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은 군청 소속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.</u></p>

② (생략)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「지방재정법」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에게,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계 이를 따른다.

제5조(수입)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바로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.

제6조(지출)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이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(大佛金)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(大佛金)을 갚아야 할 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과 관련하여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회계책임관에게,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.

제5조(수입) ①회계책임관이 수입금(「의료급여법」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다. 이하와 같다)---  
--- 수납하여야 할 금액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  
회계책임관-----  
-----.

제6조(지출) ①회계책임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대지  
급금을 구분한 후 출납원에게 -  
-----



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

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불금의 상환 등) ①기금 운용관은 대불금(大佛金)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(大佛金)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부일로 하여 3개월마다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불금(大佛金)은 무이자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대불금(大佛金)을 갚아야 할 자가 대불금(大佛金)을 납부기한까지 갚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보내야 하며, 그 기간내에 대불금(大佛金)을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-----  
----- 출납원은  
영동군 -----  
-----.

제7조(대지급금의 상환 등) ① --  
----- 대지급금-----  
-----  
----- 대지급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대지급금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대지급금-----  
--- 대지급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대지급금-----  
-----

는 의료급여를 정지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대불금(大佛金)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아니한 때에는 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

제8조(결손처분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(大佛金)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.

1. 대불금(大佛金)을 갚아야 할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

2. 대불금(大佛金)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

<신 설>

<신 설>

5. 대불금(大佛金)을 갚아야 할 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(大佛金)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때(읍장·면장의 확

-----.

③ ----- 대지급금 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제8조(결손처분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 -----

-----.

1.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
2.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

3.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전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

4.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영동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

<삭 제>

인에 따른다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